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전에 사전적으로 권리를 구제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방지하고 지방세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소상하게 안내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주장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결정기관인 위원회의 인력·기구 등을 정예화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이유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되,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수정신고납부제도의 활성화

지방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납부할 과세표준 또는 세율적용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정상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사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납부를 할 기회를 부여하여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의 부담 등 불이익을 받던 것을 없도록 하여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활성화시켜 납세자의 불만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특히 지방세법에 열거된 사유인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이외에 취득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 등의 경우도 수정신고의 사유에 포함하여 확대·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라. 지방세구제제도 운영의 내실화

지방세정에 있어서 구제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납세자를 위한 구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과세관행을 개선하고 불복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취소 등 인용시 신속한 조치로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